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34652
결재일자	2015. 11. 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회협력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	
백혜정	홍지현	홍동석	11/24 손정수		
협 조					

- 거주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-

성북구 외국인 시책자문위원 위촉계획

2015. 11.

행 정 국
행정지원과

- 거주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- 성북구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위촉계획

우리구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구성된 「성북구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」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 연임 및 위(해)촉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

I | 관 련 근 거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7조
 - 자문위원회의 설치(2009.7.10. 개정)
- 성북구 외국인자원 시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(구청장 방침, 2011.11.21.)

II | 위 원 회 현 황

- 구 성 일
 - 최초구성 : 2011. 11. 21
 - 재위촉(연임) : 2013. 11. 24
- 구성인원 : 11명 (당연직 2명, 위촉직 9명)
 - 위원장 : 부구청장(당연직)
 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행정국장
 - 위촉직 : 구의원, 외국인 관련 업무 전문가, 시민단체, 거주 외국인 등

○ 세부 구성현황(위촉직)

구분	합계	남	여	당연직	위촉직					
					소계	구의원	학계	유관기관 전문가	거주 외국인	기타
인원	11	7	4	2	9	1	2	2	3	1

□ 역할 및 기능 : 외국인시책 자문

-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-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문화준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위원회 개최 : 1회(2011.11.21.)

- 위원회 구성, 위원 신규위촉
-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소개 및 현안업무 보고, 유리피언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 자문
-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의견 청취 및 자문

Ⅲ 위원 위(해)촉 정비

□ 관련 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7조

-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"성북구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**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**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1. 당연직 위원 : 부구청장, 교육청·고용안정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·경찰서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
 2. 민간위원 :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.
- ④ **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**할 수 있다.

□ **위원 위(해)촉**

- 위(해)촉일 : 2015. 11. 24
- (위촉)임기 : 2년('15.11.24 ~ '17.11.23)
- 위(해)촉 대상
 - 재위촉(임기연장) : 5명(임기만료자중 연임 의사가 있는 자)

연번	참여분야	성명	소속	비고
1	유관기관 전문가	이연숙	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	
2	학계	박시흥	고려대학교 연구처 연구진흥팀 부장	
3	학계	크나이더	한국외국어대학교수	
4	거주외국인	Donnellan Nana		
5	기타	전요한	성골롬반외방선교회신부	

- 신규위촉 : 2명(구의원, 유관기관전문가)
 - 구의원(1명) : 구의회 추천 의원
 - 유관기관 전문가(1명): 성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
- 해촉 : 4명(구의원, 임기만료자중 연임 의사가 없는 자 등)

연번	참여분야	성명	소속	비고
1	구의원	김일영	성북구의회	구의회 신규위원 추천 예정
2	거주외국인	레나설		
3	거주외국인	김하은		
4	유관기관 전문가	전명우	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	센터장 변경, 신규참여 의사 없음

○ 위촉방법

- 재 위 촉 : 연임의사 확인 후 대상자에게 위촉 공문 발송 및 위촉장
우편 전달
- 신규위촉 : 관련 기관 추천의뢰 후 재위촉과 동일한 절차로 위촉
- 해 촉 : 연임 포기의사 확인(기 확인), 자연 해촉

위원회 개최

-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중요 현안업무 추진시
- 외국인시책 관련 주요업무 자문 필요시 개최
- 업무 중요도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 개최

IV

행정사항

- (재)위촉 승낙서 : 팩스, 이메일, 우편 제출**
- 위촉장 전달 : 우편 또는 직접전달**

붙임 : 1)성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 위촉(안)1부
2)승낙서 1부 및 위촉장(안)1부. 끝.